

# 전기제품 PL상담센터 발표

지난 1월중 이루어진 PL상담건수는 모두 28건이었으며, PL상담록과 제품별 회의내용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안을 발췌하여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물론 소비자 여러분의 많은 참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2006. 1. 1~1. 31)

일자	상담품목	상담방법	상담 내용	조치 사항
1.5	공기청정기	전화	젓가락을 공기청정기 팬에 젓가락을 고의로 삽입하여 제품 파손을 냈을 경우 업체는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가?	사용자가 고의로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업체의 이미지를 위하여 제품교환 및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1.7	전기밥솥	내방	납품받는 업체에서 PL보험가입 및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품업체에서 책임지라는 계약서 강요	부품업체와도 기본계약을 철저히하여 문서로 서로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정해 놓아야 함
1.12	전기뜸질기	전화	주로 화재원인이 온열기(부품)에 있는데, 보상책임을 안정기 제조업체에 전가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사전 계약 작성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할 것
1.13	히터	전화	대형 양팜점 납품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약관형태의 강제 계약서를 강요하고 이쓴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조정이나 기본 계약서 작성요령 검토 필요
1.17	식기세척기	내방	표시사항을 제품에 붙여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이것을 떼어버리고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시 업체에게도 책임이 있는가?	과실상계의 차원에서 업체는 완전히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1.20	전기 냉온수기	전화	완제품 제조업체와 부품업체의 책임 한계	사전 계약서 작성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할 것
1.23	전기면도기	내방	주의 및 경고 label부착시 공간 부족으로 붙이기가 힘들때의 방법	사용설명서에 모두 적어 놓는것도 바람직함
1.25	히터	내방	결함의 입증에 관한 문의	설계나 제조상의 결함판정은 사후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철저한 문서화 작업과정이 필요하다.